# 변호인의견서

사　　건　　[○○]경찰서 [2026-○○○○○○]호(접수번호) [죄명]

피 고 소 인　　[이름]

변 호 인　　변호사 [이름]

[설명] 사건 줄에는 출석요구서나 출석요구 문자에 기재된 경찰서, 접수번호 및 죄명을 기재합니다. 접수번호를 알지 못하면 '[죄명]([○○]경찰서 수사[○]팀)'으로 기재합니다.

[설명] 변호인 없이 피고소인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목을 '의견서'로, 서두를 '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.'로 변경하고, 변호인 줄을 삭제하며, 서명을 '피고소인 [이름] (인)'으로 변경합니다.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.

다 음

[설명]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(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),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사법경찰관은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(검

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).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, 그 밖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므로(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), 의견서는 그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. 고소 사실의 요지

이 사건 고소 사실은, 피고소인이 [2026. ○. ○.] [장소]에서 [고소인 이름]에게 [행위]하였다는 것입니다(구체적으로 기재할 것).

[설명]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(같은 규정 제69조 제3항). 고소장을 열람하였으면 혐의사실을 그대로 옮기고, 열람하지 못하였으면 출석요구 때 고지받은 혐의사실을 기재하고 그 사정을 밝힙니다.

## 2. 본 의견서의 요지

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문제삼는 피고소인의 행위는 [세] 가지입니다. ① [행위 1], ② [행위 2], ③ [행위 3]입니다.

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,

①은 [죄명]죄의 [구성요건]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②는 [사실과 다르며], ③은 [평가]에 불과합니다. 따라서 이 사건 고소 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이하에서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[설명] 피고소인의 입장은 전부 부인, 일부 부인 및 인정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. 그 입장에 따라 5. 정상에 관한 의견을 둘지와 6. 결어의 문장이 달라집니다. 고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셋째 문단을 '피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.'로 변경합니다.

## 3. 사실에 관한 의견

### 가. 당사자의 관계

피고소인과 고소인은 [관계]입니다(구체적으로 기재할 것).

### 나. [2026. ○. ○.]자 [사건의 경위]

1) 피고소인은 [2026. ○. ○.] [○○:○○]경 [장소]에서 [상대방]에게 [행위]하였습니다(증 제1호증).

2) [그다음의 사실](증 제2호증).

즉, [위 사실에 대한 평가]입니다.

[설명] 사실은 시간순으로, 한 문장에 하나씩, 주어, 일시, 상대방, 목적어 및 행위의 순서로 기재하고, 문장 끝 괄호에 근거 증거를 표시합니다. 사실에 대한 평가는 '즉,' 또는 '결국'으로 시작하는 문단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.

### 다. 고소 사실과 다른 부분

피고소인은 [인정하는 사실]은 다투지 아니합니다. 그러나 피고소인이 [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]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(구체적으로 기재할 것).

[설명]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또는 평가를 나누어 기재합니다. 인정하는 범위를 특정하여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됩니다.

## 4. 법리에 관한 의견

### 가. 관련 법리

[법령 이름] 제[○]조는 "[조문]"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대법원은 "[판결 이유]"라고 판시하였습니다(대법원 [20○○. ○. ○.] 선고 [20○○도○○○○] 판결 참조).

[설명] 조문은 현행 법령의 문언을 그대로 옮깁니다. 판례는 요약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 이유의 원문을 인용하며, 끝 괄호에 선고일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.

**나. 이 사건의 경우**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,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) '[구성요건 1]'에 관하여, [이 사건의 사실]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.

2) '[구성요건 2]'에 관하여, [이 사건의 사실]입니다.

**다. 소결**

결국 피고소인의 행위는 [평가]에 불과하므로, [죄명]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.

[설명]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(범죄인정안됨, 증거불충분), 죄가안됨, 공소권없음 및 각하가 있습니다(같은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).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(형법 제20조),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'가사 구성요건해당성을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'라는 소제목을 소결 앞에 따로 둡니다.

## 5. 정상에 관한 의견

[피고소인의 반성, 피해 회복, 전력 유무 등 참작할 사정](증 제[○]호증).

[설명] 일부 부인 또는 인정의 경우에만 둡니다. 전부 부인의 경우에는 이 항을 삭제하고 6.을 5.로 변경합니다. 부인하는 서면에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문장을 넣으면 부인하는 취지와 충돌합니다.

## 6. 결어

[전부 부인의 경우]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부 부인의 경우]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시어, 부디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시거나,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시더라도 금번에 한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[인정의 경우] 피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송치 의견에 위 정상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설명] 입장에 따라 세 문단 가운데 하나만 남깁니다.

## 증 거 방 법

1. 증 제1호증 [증거 이름]
2. 증 제2호증 [증거 이름]

## 첨 부 서 류

1. 변호인선임신고서 1부
2. 위 증거방법 각 1부

[설명]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면 첨부서류 항의 1.을 삭제합니다.

[2026. ○. ○.]

피고소인의 변호인

변호사 [이름] (인)

# [○○]경찰서장 귀중

---

위 서식은 변호사 한동하가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. 해당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.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후의 형사 관련법의 동향과 새로운 판결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